

창원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나101043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나101043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. 1. 9 선고 2022가단10122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, 담당변호사 김창환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7. 26.

판결선고 2024. 10. 11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. 1. 9. 선고 2022가단101222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제1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증여계약(혹은 각 변제행위)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2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제2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20. 9. 16. 국민은행 계좌(계좌번호: 불상)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42,9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2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판단]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로 C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. 을 제1호증에 의하면, 이 사건 소제기가 있고나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나, 그러한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로 C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또한,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별지 표 기재 돈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비롯한

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별지 표 기재 금원을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

별지